도쿄만 해상 교통관제 일원화

2018년 1월 31일 운용 개시

선박 운항을 안전하게·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쿄만이 다시 태어납니다.

도쿄만 내의 각 항내교통관제실과 도쿄만 해상교통센터를 통합

도쿄 해상보안부
항내교통관제실

요코하마 해상보안부
항내교통관제실

가와사키 해상보안서
항내교통관제실

도쿄만 해상교통센터
(간논자키)

지바 해상보안부
항내교통관제실

해상교통센터
해상교통안전법 상의 항로에 관한 통보의 접수, 관제계획 수립, 정보 제공 등을 실시

항내교통관제실
항측법 상의 수로에 관한 통보의 접수, 관제 계획 수립, 정보 제공 등을 실시

NEW

도쿄만 해상교통센터
(요코하마 제2합동청사)

제3관구 해상보안본부

입역 통보 ※개정 해상교통안전법 제32조의 통보

비상재해 시에 지정 해역 내에 있는 선박을 파악하기 위해 지정 해역에 입역하는 대상 선박은 도쿄만 해상교통센터에 VHF 무선전화 등에 의한 입역 통보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위치 통보는 폐지합니다.

●대상 선박

길이 50m 이상의 선박
(AIS를 작동시키고 있는 선박은 제외※)

※간이형 AIS를 작동시키고 있는 선박은 통보 대상 선박입니다.
※총톤수 100톤 이상이며 30명 이상 탑승하고 있는 선박도 통보를 부탁합니다.
(AIS를 작동시키고 있는 선박은 제외)

●통보 사항

1 선박의 명칭
2 호출부호
3 통보 지점에서의 선박의 위치
4 행선항이 정해진 선박은
행선항(안벽•묘박지)
5 선박의 길이
6 선박의 흘수

●통보 위치

1. 입만 시
   • 쓰루기자키-스노사키 라인
2. 출항 시
   지정 해역으로 들어갈 때 또는 들어가기 전
   • 각 항구의 잘 알려진 물표 등의 부근
   • 주변에 잘 알려진 물표가 없는 경우에는 북위, 동경을 통보

통보 위치(예)

- ○○ 항로•수로 출항 중, ○○ 앞바다 발묘 중, ○○ 부이 통과 중, ○○ 방파제 통과 중 등의 순간
- 입만 시에는 쓰루기자키 등대와 스노사키 등대를 이은 선을 통과할 때 '쓰루기자키-스노사키 라인 통과 중'

입역 통보(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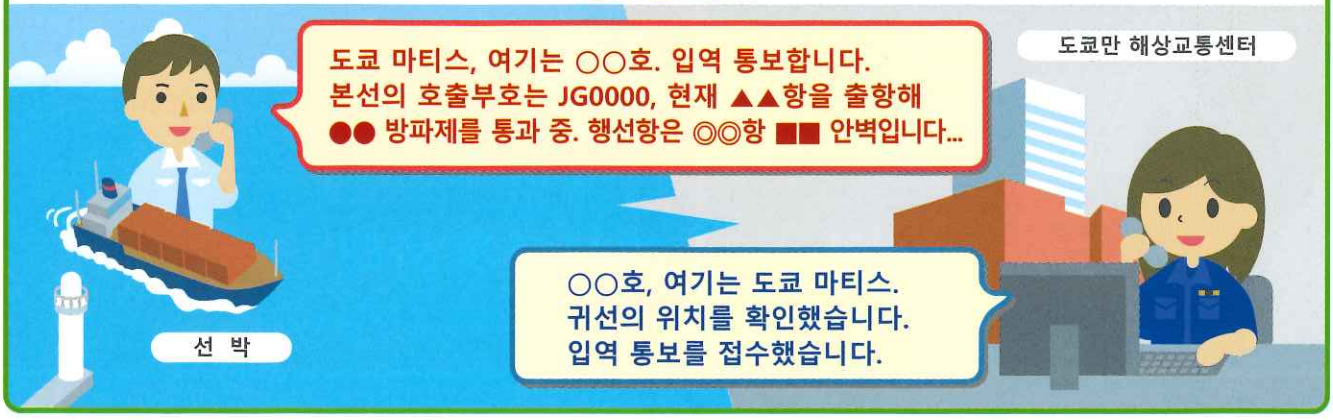

평상시의 새로운 제도

정보 청취 의무 해역의 확대

도쿄만 내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도쿄만 해상교통센터가 VHF 무선전화로 제공하는 정보의 **청취 의무 해역**이 확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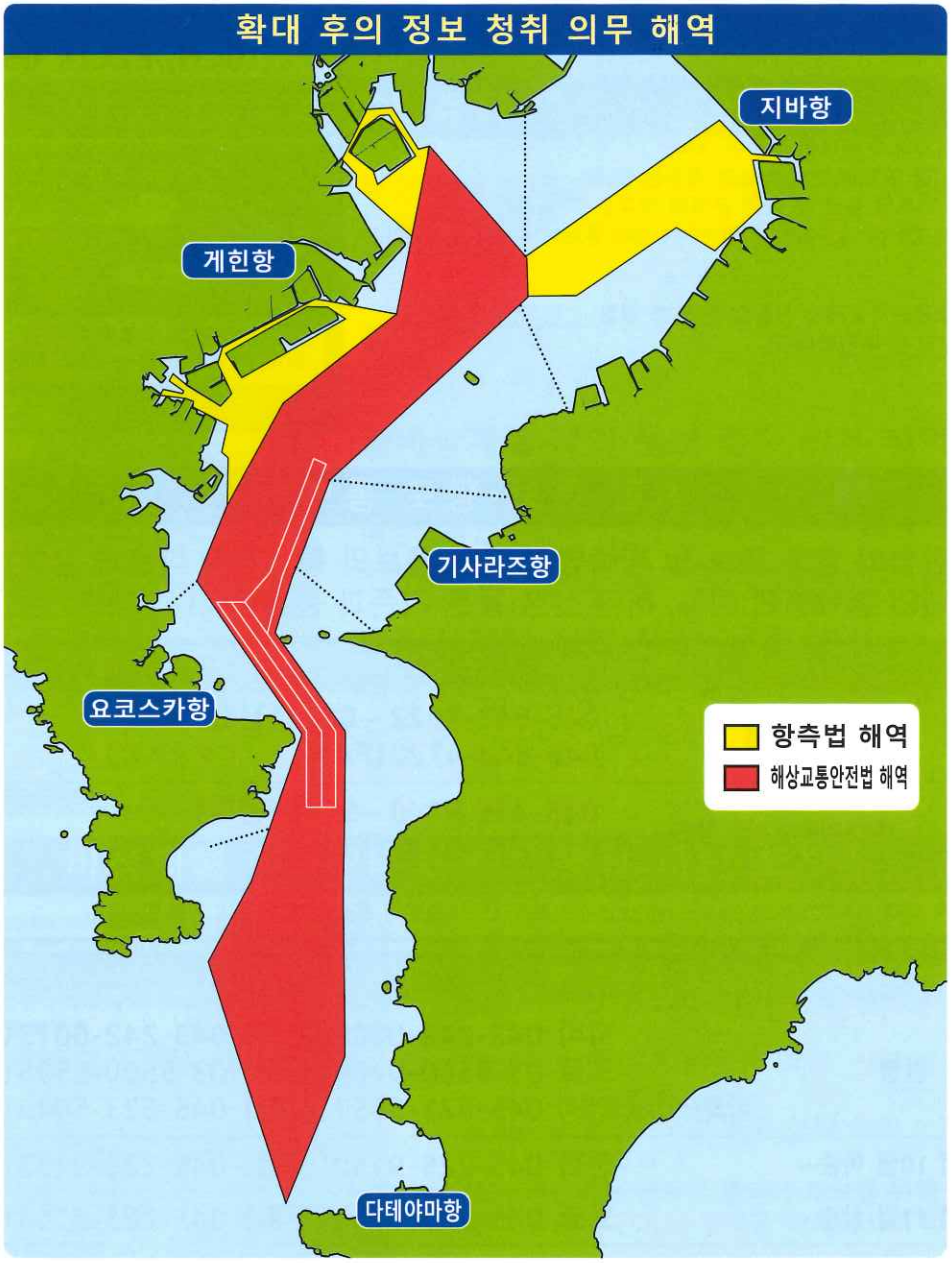

●정보 청취 대상 선박

- 해상교통안전법 적용 해역에서는 길이 50m 이상의 선박
- 항측법 적용 해역에서는 총톤수 500톤 초과 선박

●정보 제공 등

- 정보 청취 의무 해역에서 도쿄만 해상교통센터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나 권고 등을 실시합니다.

항측법의 사전 통보의 생략

각 항구 관제 수로 입항 하루 전 오전까지 실시하는 항측법의 사전 통보※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생략 가능합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법의 항로 통보의 변경도 생략 가능합니다.

※개정 항측법 제38조 제2항의 통보(개정 전 항측법 제36조의 3 제2항의 통보)

●생략의 조건 등

다음 선박은 우라가수도 항로 입항 하루 전 오전까지 실시하는 해상교통안전법의 항로 통보※(변경 통보 포함)에 항구 내의 계류 시설명 및 관제 수로 입항 예정 시각을 추가 기입함으로써 항측법의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의 통보

입항 시

우라가수도 항로 통항 후 다른 항구에 기항하거나 묘박하지 않고 항측법의 관제 수로를 항행하려는 선박

출항 시

항측법의 관제 수로 통항 후 다른 항구에 기항하거나 묘박하지 않고 우라가수도 항로를 통항하려는 선박

통보는 우측 서식에 따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법의 항로 통보와 항측법의 사전 통보를 개별 송부할 경우에도 가급적 동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로 통보·사전 통보 공통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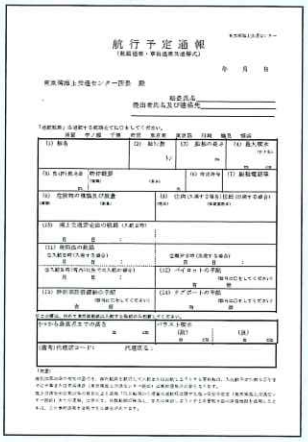
航行予定通報

※통보의 송부처는 항로 통보 송부처와 동일합니다. 연락처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식 입수는 여기에서⬇
http://www6.kaiho.mlit.go.jp/tokyowan/

소형 선박의 항법(지바항)

지바항에서는 게힌항과 동일하게 소형 선박의 항법이 적용됩니다.

지바항은 항측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선박 교통이 현저히 혼잡한 특정 항구로 지정되므로 총톤수 500톤 이하의 선박(소형 선박)은 총톤수 500톤 초과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지바항 내를 항행하는 총톤수 500톤 초과 선박은 국제 신호기 숫자기 1을 게양해야 합니다.

입항 시각의 지시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게힌항 및 지바항의 관제 수로※를 항행하려는 관제선에 대하여 수로의 입항 시각의 변경, 진로를 경계하는 선박의 배비 등을 지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요코하마 항로, 쓰루미 항로, 가와사키 항로, 게힌 항로, 도쿄 니시 항로, 도쿄 히가시 항로, 지바 항로, 이치하라 항로

비상재해 발생 시의 새로운 제도

도쿄만 내에 대형 해일 경보가 발령되는 등의 비상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쿄만 내의 선박 교통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쿄만 내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해상보안청에서 비상재해 발생을 알려 드립니다.
도쿄만 해상교통센터를 호출 시 VHF 무선전화 16CH이 혼잡한 경우에는 13CH로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재해의 예로 도쿄만 내에 대형 해일 경보가 발령된 경우나 대형 유조선에서 대규모의 위험물 유출이나 화재 발생 등, 그 영향이 도쿄만 내 광범위에 미칠 수 있는 재해를 들 수 있습니다.

정보 청취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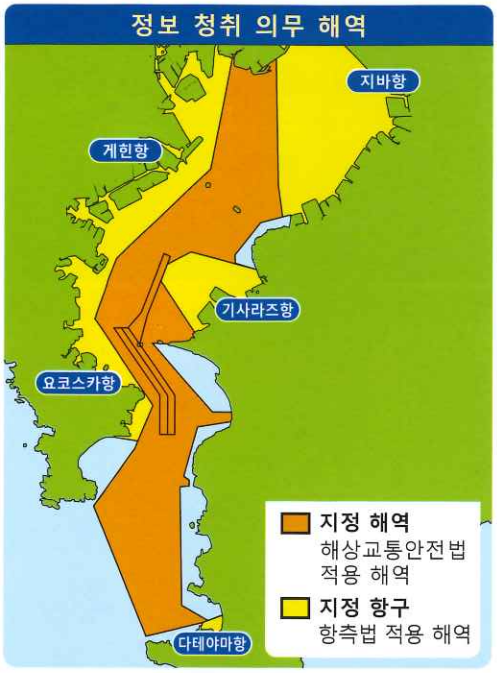

비상재해 시에는 해상보안청이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비상재해 등에 관한 정보를 각 선박은 청취해야 합니다.

●대상 선박

길이 50m 이상의 선박

●비상재해 시의 정보 청취 의무 해역

도쿄만의 거의 전역이 대상이 됩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 해역뿐만 아니라 게힌항, 지바항, 기사라즈항, 요코스카항, 다테야마항에서도 적용됩니다.

●비상재해 시의 항행 제한 등

비상재해 시에는 선박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쿄만으로의 진입 제한, 항행 제한, 퇴거 명령, 이동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재해 시의 대형 선박 우선 피난 묘박지

비상재해 시 등에는 기사라즈 앞바다가 대형 선박 우선 피난 묘박지가 됩니다.

※기사라즈 앞바다 해역을 대형 선박(예인선의 보조나 도선사의 승선을 필요로 하는 선박)의 우선 피난 묘박지로 설정하므로 대형 선박 외의 선박은 이 해역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난하는 선박의 통항대 확보를 위해 항로·경로 지정 해역 등의 부근에서 묘박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재해 시의 대형 선박 우선 피난 묘박지

❶북위 35도 27분 25초 동경 139도 51분 14초
❷북위 35도 25분 39초 동경 139도 52분 00초
❸북위 35도 23분 54초 동경 139도 48분 42초
❹북위 35도 25분 03초 동경 139도 47분 40초
의 각 지점을 순서대로 이은 선 및❶과❹를 이은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대형 해일 경보 등에 의한 비상재해의 경우 만 밖으로 진출이 가능하면 만 밖으로의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통보처

VHF 무선전화에 의한 호출 명칭 등

항측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기반한 통보 등에 사용하는 VHF 무선전화에 의한 호출 명칭을'도쿄 마티스'로 통일하고 VHF 무선전화 채널(69CH)을 추가합니다.

※각 관제 수로 및 그 주변 해역 관련 문의 시에는
호출 및 응답 후
지바 항로 및 이치하라 항로의 경우는 '지바'
도쿄 니시 항로 및 도쿄 히가시 항로의 경우는 '도쿄'
가와사키 항로, 쓰루미 항로 및 게힌 운하의 경우는 '가와사키'
요코하마 항로의 경우는 '요코하마'를 말머리에 넣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항내교통관제실에서 사용해 온 호출 명칭 '○○ 항내 보안' 및 '○○ 하버 레이더'는 폐지합니다.

도쿄만 해상교통센터에서 사용하는 VHF 무선전화의 CH

12CH, 13CH, 14CH,
16CH, 22CH, 69CH

통신 예

사전 통보·항로 통보처

해상교통안전법의 항로 통보 및 항측법의 사전 통보의 통보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사전 통보 외의 항측법의 신고, 허가 신청 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항로 통보

현행	046-843-8622 ~ 8624(전화) 046-844-4720(FAX)
2017년 12월 상순~	045-225-9140 ~ 9141(전화) 045-225-9142(FAX)

※항측법의 사전 통보를 생략할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의 항로 정보에 항내의 계류 시설명 및 관제 수로 입항 예정 시각을 추가 기입해 주십시오.
※상기 연락처 외에 NACCS(http://www.naccs.jp/)는 2017년 10월부터 통상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전 통보

현행	지바 043-242-0009(전화) 043-242-0013(FAX) 도쿄 03-5500-0769(전화) 03-5500-0595(FAX) 가와사키/요코하마 045-621-5957(전화) 045-623-5045(FAX)
2017년 10월 하순~	전화 045-225-9150(전화) 045-225-9153(FAX)
2017년 11월 상순~	도쿄 045-225-9151(전화) 045-225-9154(FAX)
2017년 10월 하순~	가와사키/요코하마 045-225-9152(전화) 045-225-9155(FAX)

※전화·팩스 번호의 변경은 상세한 일자가 결정되는 대로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공지합니다.
※상기 연락처 외에 NACCS(http://www.naccs.jp/)는 평소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JCG

제3관구 해상보안본부 교통부 항행안전과

주 소 우편번호 231-8818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기타나카도리 5-57
전화번호 045-211-1118(대표)

2017년 10월 작성